



문서번호 : 25-09-사무처-0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5. 09. 24.(수)
전송매수 : 총 10매

공동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 징벌배상 도입으로 불법 판매, 얻는 이익보다 잃는 비용 크게
-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및 위법계약 취소권 도입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거래 영역 전체로 집단소송 전면 확대하여, 다수 피해자 효과적 · 효율적 구제

일시 장소 : 2025. 9. 24.(수) 15:00, 국회 소통관

1. 기자회견 취지와 내용

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민변·참여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소비자 4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패키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으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과 피해의 신속한 집단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입법이 추진된 배경에는 2019년 DLF(피해자 3,243명·손실 4,468억 원), 라임(환매중단 1조4천억 원), 2021년 홍콩 H지수 연계 ELS(17만 계좌·손실 4조6천억 원), 2025년 홈플러스 유통화전단채(약 676명·피해 2,075억 원)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있다. 한창민 의원은 해당 사건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위험은 숨겨졌고, 설명은 부족했으며, 내부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분쟁은 길었고 소송은 비쌌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법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고의·중과실일 경우 최대 6배) 징벌배상, ▲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부당권유 위반에 대한 금융사의 입증책임 전환 추가, ▲중대한 위법(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일 경우)이 확인되면 해지를 넘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위법계약 취소권 등을 담았다.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대상을 증권 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허가재판-본안재판의 이원 구조를 중간판결 방식으로 단순화해 장기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과 부합하지 않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원칙

※ 적정성 원칙 : 금융사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연령 등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원칙

※ 설명의무 : 상품의 위험이나 조건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알릴 의무

※ 부당권유 위반 : 강압적이거나 거짓 정보를 주면서 억지로 상품을 사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이 강화되고 잘못된 판매가 줄어들며, 소액 피해자들도 함께 구제받아 금융시장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근 변호사(참여연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 모두의 고통이었다”며 국회의 종합 개혁을 촉구했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부장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느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입증책임 경감과 제도적 배려를 요청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구제가 더뎠다”며 이번 개정안이 금융소비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창민 의원은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고, 불법으로 얻는 이익은 배상으로 돌려놓는 상식의 법질서를 세우겠다”며 “흩어진 피해는 집단소송으로 함께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각각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백선희(조국혁신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윤종오·손술·전종덕·정혜경(진보당), 김선민·정춘생·김재원(조국혁신당),
최혁진·김종민(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2 : 발언문**

■ **붙임3 : 현장 사진**

[붙임 1] 기자회견문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문]

- 징벌배상·입증책임 전환·위법계약 취소·집단소송 -

오늘 우리는 함께 ‘금융소비자 4법’을 발의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위법한 판매를 멈추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2019년 DLF는 금리와 연동된 고위험 상품이었지만 은행 창구에서 저위험처럼 팔렸고, 3,243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매액 7,950억 원 중 4,468억 원이 손실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라임 사태에서는 환매 중단으로 1조 4천억 원이 묶였습니다. 2021년 홍콩 H지수 연계 ELS는 지수 급락으로 17만 계좌에서 4조 6천억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사건이 발생해 약 676명이 2,075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태들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위험은 숨겨지고, 설명은 부족했으며, 내부통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은 길었고 소송은 비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4법’에 다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합니다. 법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세 배, 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부당권유 중 동시에 3개 이상 위반하면 고의·중과실로 최대 여섯 배까지 배상하도록 합니다. 불법 판매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불법 판매 유인을 차단합니다.

둘째, 금융사의 입증책임으로 전환합니다. 금융사의 설명의무뿐 아니라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원칙까지 금융사가 위법과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관련 증거는 대부분 금융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설명에서 벗어나, 우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성 상품 판매와 위험상품 판매를 명확히 설명하는 문화가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위법계약 취소권을 도입합니다. 각종 금융상품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사기적 판매 등 위법이 확인되면 해지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아예 취소해 원점으로 되돌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넷째, 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에게도 확대합니다. 투자자에 한정된 증권집당소송의 대상을 이제는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소송절차를 단순화합니다. 특히 경제성이 없어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었던 소가 미만의 소액사건 피해를 함께 구제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금융소비자 집단을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판매-분쟁-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메우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입증책임은 공정하게 부담하고, 불법으로 얻는 이익은 비용으로, 고의·중과실일 경우 보다 무겁게 되돌리고, 흩어진 피해는 다함께 구제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금융소비자 4법’을 처리해 시민들이 금융사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붙임 2] 발언문 모음

□ 정호철 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부장입니다.

저희 경실련은 소비자 단체로서,

- 2020년 라임펀드 사태 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 2021년 소액주주 3600여명과 불법 공매도 투기종목 국민검사청구와 금융위 소송제기,
- 그리고 2023년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공대위와 금융사의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 피해 분쟁조정청구와 손해배상소송 등을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바로 피해자의 ‘입증책임 전환’과 ‘집단소송제 도입,’그리고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니다.

소액주주들과 함께 증권사로부터 불법 공매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사고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청, 금감원, 시중·저축은행, 카드·보험사, 캐피탈 등 57개 가해 금융사를 돌아다니며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를 입증해내는 데만, 적게는 1년, 많게는 2~3년이 걸렸고 현재까지도 대법원 소송 진행중입니다.

다수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피해임에도, 금융소비자가 여기저기 발로 뛰며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정 금융사의 위반행위와 고객 집단의 피해원인이 사실상 동일한 데도, 금융소비자 개인의 개별적인 재산피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쫓아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소가 미만의 개별 소액사건은 경제성이 없어, 다수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과징금이 저렴해 불법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과 시장조성자, 손해배상이 싸게 먹혀 전자금융실명거래 준법통제를 포기하는 금융사들을 보면서 피해방지와 예방을 위해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과 피해자들이 증거수집을 위해 여기저기 구걸하며 돌아다니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해주시요.

경실련은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 4법 개정과 도입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한창민 의원과 함께 발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 ELS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이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되거나,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모은 노후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부적절한 권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구제는 매우 더뎠습니다. 결국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소비자를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금융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불완전판매를 하면 단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손해액의 최대 6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얻는 이익보다 잃는 비용이 훨씬 크도록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둘째,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확대합니다.

현재는 일부 설명의무 위반에만 적용되던 입증책임 전환을,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부당권유 등 주요 의무 위반에도 적용합니다. 즉, 앞으로는 소비자가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금융사가 적법하게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소비자가 손해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도한 증명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계약취소권을 도입합니다.

설명 의무·적합성·적정성·부당권유 의무 중 3개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배상에 그치지 않고, 불공정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은 더 이상 법률상 의무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는 이제 금융사의 불법행위 앞에서 ‘입증의 벽’에 막히지 않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회사들도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이 더 이상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 모두의 고통이었습니다. DLF, 라임, 홍콩 H지수 ELS, 그리고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회사는 책임 있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무책임하게 팔았습니다. 피해는 늘어났지만, 현행법은 각종 금융피해의 집단 소송조차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증권분야에만 제한된 낡은 법과, 본안과 허가절차를 따로 두는 비효율적 6심 절차 속에, 피해자들은 끝없이 긴 싸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까지 부추긴 근본적 한계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의 개정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뤄지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집단소송의 범위를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 전반으로 넓히면, 불완전판매와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 또한 중간판결 방식으로 단순화해, 피해자가 빠르게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액·다수 피해자들에게 소송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회사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계약취소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반드시 함께 통과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허술한 틈이 남기 쉽습니다.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철저히 막고, 피해 입증의 부담은 금융회사에 돌리며, 중대한 위반 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고, 금융회사도 책임 경영을 실천할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 모두의 피해를 끝내기 위해, 국회는 지금 반드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개혁에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붙임 3] 현장사진

